

# 행처보고에 대하여

이 강의는 기본검사명단(RTP)에 올라있는 선수들과 앞으로 기본검사명단에 추가될수 있는 선수들을 위한것이며 강의에서는 행처자료의 류형과 자료작성방법, 세계반도핑기구의 반도핑행정관리체계를 통해 행처자료를 제공할것을 누가 요구하는가 등에 대하여 취급하게 된다.

## 제 1 과

### 강의 목적

- 기본검사명단(RTP)과 행처보고에 대하여 잘 알고있도록 하는것이다.
- 행처보고가 검사(도핑통제)와 어떻게 련관이 있으며 행처보고가 깨끗한 체육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 행처보고요구조건들과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들에 대하여 설명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 반도핑행정관리체계와 선수중심을 리용하여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행처보고를 제출 및 갱신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강의목적은 선수가 정확하고 완성된 행처자료를 필요할 때 제공할수 있도록 행처보고에 대한 모든것을 인식시키자는것이다.

## 제 2 과

### 기본검사명 단(RTP)

선수는 기본검사대상으로 이미 선택되었거나 앞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선수는 자신의 운동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자신의 책임도 변화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선수는 다음과 같은 활동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 기자회견
- 후원단체나 후원성원과의 만남
- 대리인과의 사업
- 재정관리
- 국가팀성원으로서의 활동
- 훈련시간증가
- 해외에서의 경기기간

선수는 우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반도핑책임도 변화될수 있다. 반도핑사업 역시 예외로 될수 없다.

선수가 기본검사대상으로 되면 그에 따라 반도핑활동에서의 책임도 달라진다. 선수가 기본검사대상으로 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리행하는것은 다른 책임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또한 훈련과 경기기간의 청백함을 립증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본검사명단은 검사에서 높은 우선권을 가진 선수들의 명단이다. 이 명단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1. 국제련맹 (IF)은 국제급 기본검사명단(IRTP)을 작성한다.
2. 민족반도핑조직(NADO)은 민족급 기본검사명단 (NRTP)을 작성한다.

기본검사명단에 속한 모든 선수들은 행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규약에서 밝힌 기본검사명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국제련맹 혹은 민족반도핑조직의 검사분포계획으로 경기시 및 경기외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높은 우선권을 가진 선수들의 명단은 국제련맹에서 국제급으로, 민족반도핑조직에서 민족급으로 따로따로 작성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수들이 규약 5.5 항과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밝힌대로 행처자료를 제출할것을 요구한다.

기본검사명단에 포함되는 대상은 국제련맹이나 민족반도핑조직이 결정한다. 국제련맹이나 민족반도핑조직의 검사대상선정은 다음과 같은 인자들에 기초한다.

- 올림픽 또는 장애자올림픽 선수.
- 국가적으로 높은 우선권을 가지는 종목의 선수.
- 자기 종목에서 순위가 높은 선수.
- 높은급국제경기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선수(실례: 세계선수권 대회메달수상자로 될수 있는 선수).

1. 선수는 이러한 인자들중 한가지에 부합되면 기본검사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다.
2. 선수가 기본검사대상으로 되면 행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선수가 기본검사대상으로 되면 추가적인 반도핑책임을 져야 한다.

## 제 3 과

### 행 처 자 료

모든 기본검사대상선수들은 행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행처자료를 제공하는것은 선수에게 있어서 깨끗한 체육을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한가지 방도이다.

왜냐하면 일부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은 경기시에만 금지되지만 일부는 모든 경우에 금지되기때문이며 검사 역시 경기시검사만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임의의 장소, 임의의 시간에 진행하기때문이다.

경기외에 사용한 모든 금지물질이 경기시검사에서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을 언제 사용하였으며 또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생리적특성에 따라 나타난다. 이것은 경기외검사가 깨끗한 체육을 보호하는데서 중요하다는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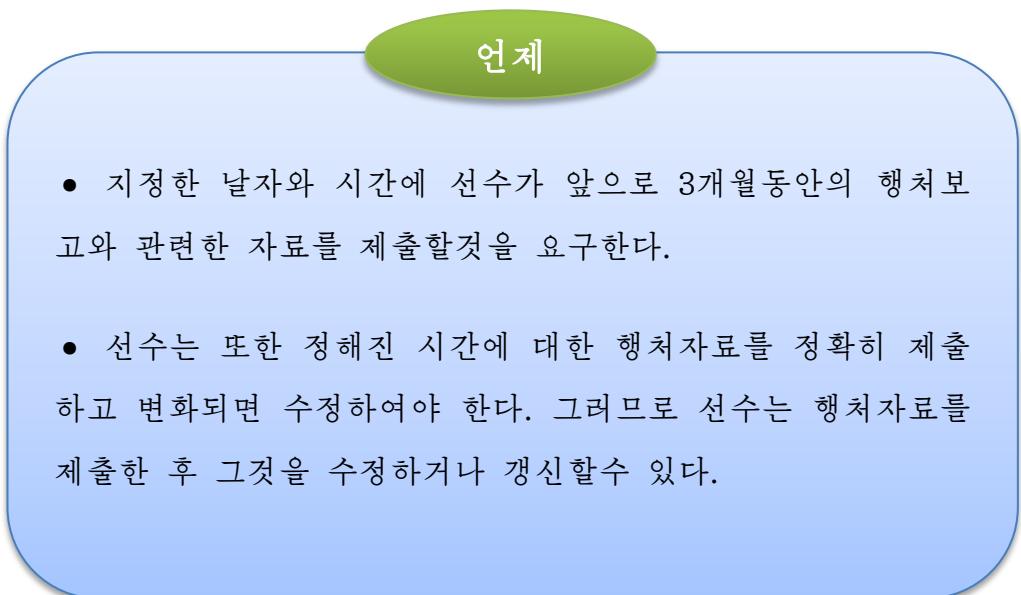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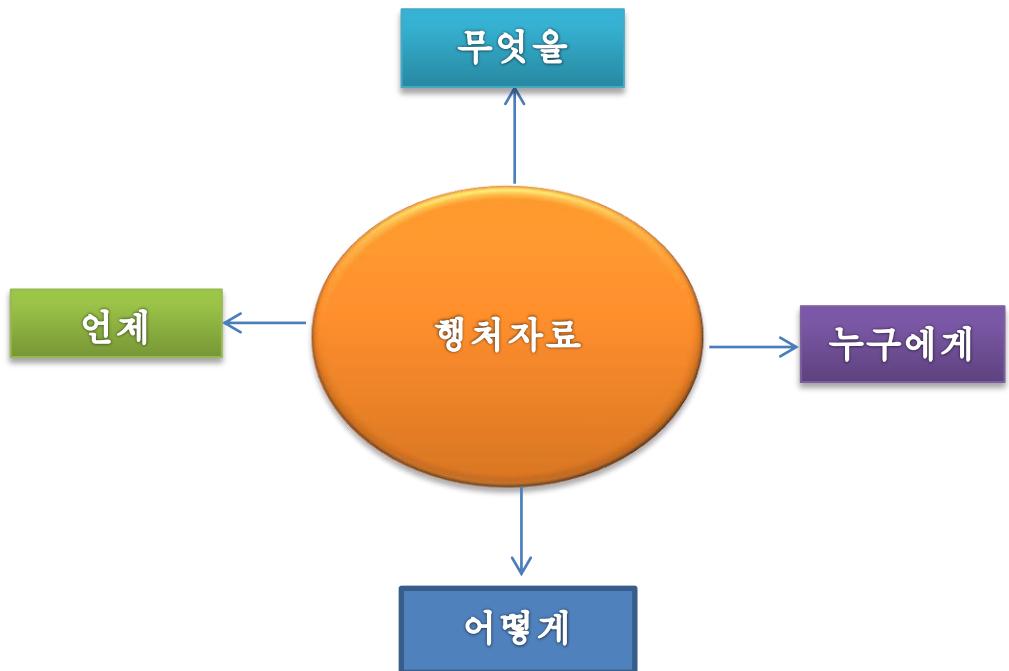
그리면 왜 이 문제가 제기되는가?

이것이 행처자료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선수들은 경기외검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반도횡조직은 경기외 검사를 위해 선수를 찾을수 있도록 선수에게 행처자료를 요구한다.

이러한 자료를 《행처자료》라고 한다.

## 행처자료에 무엇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도해



## 무엇을

- 선수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선수의 숙박주소.
- 훈련, 사업, 등교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 경기일정과 경기가 진행되는 장소.
- 검사를 받기 위해 이용할수 있는 60 분간 행처자료.

## 누구에게

선수는 자기의 국제련맹(IF)이나 민족반도핑조직(NADO)에 행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어떻게

- 기본검사대상선수들의 대부분은 세계반도핑기구의 반도핑 행정관리체계(ADAMS)를 이용하여 행처자료를 제출한다.
- 세계반도핑기구는 최근시기 선수들이 행처자료를 제출하고 갱신할수 있도록 선수중심이라는 이동형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선수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선수의 숙박주소
- 훈련, 사업, 등교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 선수가 참가하게 된 경기
- 검사를 받기 위해 이용할수 있는 60 분간 행처자료

행처자료는 다음분기 3 달동안의 자료를 지정된 시간과 날자에 제출해야 한다.

행처자료는 경기외검사를 위하여 선수를 찾을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 선수와 련계할수 있는 자료

선수는 선수의 반도횡조직이 선수와 련계할수 있도록 우편주소와 전자우편주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언: 만일 선수가 아파트에서 산다면 선수는 인민반은 물론 잘 알려진 가까운 건물의 이름이나 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신호장치》나 출입체계가 있다면 행처자료에 이러한 세부자료들도 추가하여야 한다.

## 선수와 련계할수 있는 전화번호.

조언: 선수는 반도횡행정관리체계대면부측면에서 단문통보문을 작성할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선수가 단문통보문을 통하여 갱신된 행처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선수의 숙박내용과 주소(선수가 밤에 머무르려고 하는 곳)

선수는 자기의 집이나 동료의 집 등 자기가 숙박하려는 주소를 충분히 밝혀야 한다.

조언: 호텔도 포함된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만일 선수가 해외에서 훈련하거나 경기를 하고있다면 선수는 위치와 숙박하는 장소에 대한 충분한 주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수는 훈련, 사업, 등교와 같은 규칙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위치에 대한 모든 주소를 다 밝혀야 한다.

조언: 선수는 호동번호, 훈련하는 위치 등 기본 세부자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주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경기일정

선수는 경기대회이름과 날자, 위치, 경기가 진행되는 장소의 충분한 주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려행이 필요하다면 운수수단, 비행기로 가는 경우 항로와 비행기번호, 출발날자와 시간 등과 같은 려행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언: 만일 선수가 계획보다 빨리 경기에 참가하거나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선수는 행처자료를 갱신해야 하는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선수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기를 찾을수 있는 분기 매일에 대한 60 분시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사이의 임의의 시간이 될수 있다.

조언: 많은 선수들은 이른아침이나 저녁시간과 같이 대체로 집에 있을 때 60 분시간자료를 제공한다.

만일 선수가 자기가 밝힌 60 분시간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검사실패》로 된다.

임의의 시간에 선수의 계획이 변경되면 선수는 항상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행처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중요한것은: 선수가 자기의 계획이 달라졌다는것을 안 즉시 자기의 행처자료를 수정하는것이다. 선수는 임의의 시간에 60 분시간자료의 1 분에 이르기까지 행처자료를 수정할수 있다. 선수는 반도횡 행정관리체계나 선수중심을 리용하여 갱신을 쉽게 간단하게 할수 있다.

선수는 자기가 반도횡 규정을 준수한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행처자료를 제공한다.

## 제 4 과

### 행처자료제출(누구에게, 어떻게)

선수는 행처자료를 요구하는 통지를 받으면 어디에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대다수 선수들은 세계반도핑기구의 반도핑행정관리체계(ADAMS)와 선수중심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행처자료를 제공한다.

반도핑행정관리체계는 행처자료를 포함한 반도핑자료들이 집합된 자료관리체계이다. 이것은 선수와 반도핑조직이 리용하는 안전한 자료기지체계이다.

## 1. 선수는 반도핑 행정 관리 체계를 통하여 어떻게 행처자료를 제출하는가?

선수는 어떤 행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반도핑 행정 관리 체계를 통한  
행처자료 제출



1 단계

반도핑 행정 관리 체계에 들어가기

선수는 민족반도핑 조직이나 국제련맹으로부터 받은 사용자이름과 암호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입단추를 눌러 싸이트에 들어간다.

만일 이것이 반도핑 체계에 대한 첫 가입이라면 선수는 자기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출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단계

선수 행처 보고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행처 보고》를 눌러 새로운 행처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재의 행처자료를 재확인한다.

반도핑 행정 관리 체계는 자료제출 단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하여 입력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반도평 행정관리체계를 통한 행처자료제출



### 3 단계

#### 행처자료입력

만일 선수가 행처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주요 사항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반도평 행정관리체계에서 경고신호를 받게 될 것이다.

행처자료를 입력하면 푸른색으로 표시되면서 매 항목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만일 푸른색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놓쳤다는것을 의미한다.

### 4 단계

#### 행처자료제출

지정된 분기간 해당 모든 행처자료를 입력하여 완성하고 오류가 없으면 《제출》 단추를 누른다.

선수가 행처자료를 제출한 후에 그것을 다시 편집하여야 한다면 《편집》 단추를 누른다.

행처자료를 수정한 후 보관단추를 누르고 다시 제출단추를 눌러야 한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선수는 임의의 시기에 갱신한 행처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만일 어떤 이유로 일정이 변화되면 행처자료갱신을 책임져야 한다.

매 분기 행처자료를 제출할 주요 날자를 달력이나 기록장에 기록해둔다.	60분시간자료의 시작을 경보로 설정해준다.
선수가 행처자료를 제출할 때 검사를 위해 쉽게 찾을수 있는 위치로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자우편주소, 우편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연계자료를 확인하고 갱신한다.

질문: 의심되는 경우 국제연맹이나 민족반도평조직에 문의하거나 반도평행정관리체계의 성원과 연계 한다.

## 2.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민족반도평조직이나 국제련맹과 련계한다.

- 선수의 반도평행정관리체계사용자이름을 잊은 경우.
- 선수가 불명확한 사용자이름이나 암호로 9 번 가입시도를 한 결과 영구적인 열쇠로 채워진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도평행정관리체계의 도움창을 보시오.

- 즉 다음과 같은 기술적난관에 부닥치는 경우
- 반도평행정관리체계에 오유가 발생한 경우.

## 제 5 과

### 처 벌

#### 1. 만일 선수가 행처보고요구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수가 행처보고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11 가지 반도핑 규정위반(ADRVs)중 한가지 위반으로 된다.

이 반도핑 규정위반은 《행처실패》이다.

행처실패는 12 개월기간내에 3 번의 놓친 검사나 서류실패의 결합이 있을 때이다.

#### 2. 어떤것을 서류실패로 보는가?

- 지정된 날자와 시간에 따라 분기별 행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항상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행처자료를 갱신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계획이 달라질 때마다 (실례로 선수의 60 분시간자료나 선수가 숙박하려고 하는 장소) 행처자료를 수정하거나 갱신하지 않은것을 의미 한다.
- 분기때마다 행처보고사항이나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제공된 모든 자료는 선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이다.(실례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나 불명확한 장소를 밝혔을 때)

우의 사항중 임의의것이 《서류실패》로 된다.

### 3. 어떤것이 검사실패로 되는가?

선수가 밝힌 60 분시간동안에 지정한 장소에서 선수가 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검사받을수 없을 때이다.

명심할것은 선수는 항상 60 분시간안에 자기가 밝힌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 60 분시간외의 검사

선수는 행처자료에 밝힌 60 분시간외에 검사를 받을수 있다.

만일 도핑검사원이 행처자료에 기초하여 60 분시간이 아닌 시간에 검사를 진행하려는데 선수를 찾을수 없으면 선수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실례로 선수가 1234 도로에서 훈련한다고 밝혀서 도핑검사원이 찾아갔는데 이런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도핑 규정위반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수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다면 선수는 서류실패로 인한 반도핑 규정위반에 해당된다.

선수는 항상 행처자료를 최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그 어떤 리유로 일정이 달라지면 선수는 행처자료를 갱신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명심하시오.

- 만일 선수가 분기마다 행처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행처자료를 갱신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면 선수는 서류실패로 된다.
- 만일 도핑검사원이 선수가 밝힌 60 분시간에 선수가 밝힌 장소에서 선수를 찾을수 없다면 선수는 놓친 검사로 된다.

따라서 선수는 12 개월기간에 행처보고실패나 검사실패가 도합 3 번으로 되면 반도핑규정위반으로 되며 이러한 경우 2 년간의 제재를 받을수 있다.

### 명심하시오.

어떤 사람이 선수가 행처자료를 제출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해도 선수는 항상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도핑규정위반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행 척 보 고



행 척 자료는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집, 직장, 호텔, 경기, 훈련장소와 같이 선수를 찾을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들.



기본검사대상선수들은 다 같은 반도핑 책임을 가진다.



선수는 자기의 행 척 자료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선수는 분기간 매일 60 분 시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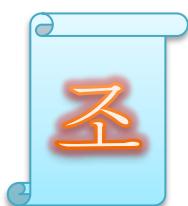
반도핑 행정 관리 체계는 선수가 행처 자료를 제출하고 갱신하는데 이용된다.



만일 선수가 밝힌 장소에서 선수를 찾지 못한다면 선수는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된다.



경기 외 검사는 깨끗한 체육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선수는 일정이 달라지면 행처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선수는 시간별로 그리고 지정된 날자에 대한 행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